##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

제정 2017. 1. 5 조례 제2788호 일부개정 2020. 12. 31 조례 제3269호(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 및 안양시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, 안양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, 12, 31>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12. 31>
  - 1. "감정노동"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 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.
  - 2. "안양시 감정노동 사용자(이하 "시 감정노동 사용자"라 한다)"란 안양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,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, 시의 사무위탁기관,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(이하 "산하기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  - 3. "안양시 감정노동자(이하 "시 감정노동자"라 한다)"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  - 4. "고객"이란 안양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안양시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안양시 및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"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"에 해당되는 노동자, 시 감정노동 사용자, 시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- 제5조(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) 시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

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. <개정 2020. 12. 31>

- 제6조(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)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,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 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(이하 "조성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  -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  - 1. 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
  - 2. 시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
  - 3. 시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
  - 4. 시 감정노동자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
  - 5. 조성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
  - 6.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20. 12. 31]

- 제7조(실태조사)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- 제8조(지침의 배포) ① 시는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(이하 "지 침"이라 한다)을 마련할 수 있다.
  - 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
  - 2. 시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
  - 3.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
  - 4. 시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
  - 5.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- ③ 시는 시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,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(추 1)

- ④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9조(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)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「안양시 민주 시민교육 조례」제7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 -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)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제11조(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)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에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,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,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건전한 노동문화 조성)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  -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노동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0, 12, 31>

[제목개정 2020, 12, 31]

제13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

##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

- 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
- 2.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
- 3. 권리보장사업
- 4. 협력관계구축
- 5.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기능은「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3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.
- 제14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4호를 제5호로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- ② 「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5.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

부칙 <2020. 12. 31 조례 제3269호,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